

2019. 8.31. 제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 일반공채(남·여), 101경비단, 경찰행정학과경채 -

경찰학개론

자료제공 : 김재규 교수

www.kpa.co.kr

1 18~20세기 독일과 프랑스에서의 경찰개념 형성 및 발달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 개념을 소극적 질서유지로 제한하는 주요 법률과 판결을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하면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크로이츠베르크 판결-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의 순이다.
- ②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은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 ④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은 경찰의 직무범위에서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시킴으로써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해설 ▶

- ① (O)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1795년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1882년 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 순서로 올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 ② (O)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 경찰관청이 일반 수권 규정에 근거하여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판결은 경찰의 직무범위는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하는 사상이 법해석상 확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③ (O) 1795년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제18조는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고 구별하여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별하였다.
- ④ (X) 1884년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2 경찰부패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같은 개정의 근거가 된 경찰부패이론(가설)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행	개정안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어떠한 금품 등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① 썩은 사과 가설
③ 형성재론

- ②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④ 구조원인 가설

해설 ② 서면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 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로 공짜 커피, 작은 선물 등 사소한 호의도 경계하자고 주장한다. 이 이론이 엄격하게 개정하는 근거로 가장 적절하다.

3 경찰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입법이란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을 의미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법규명령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②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③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서 조리는 일반적·보편적 정의를 의미하는 바, 경찰관청의 행위가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조리에 위반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④ 판례에 의할 때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경우 이는 법의 일반원칙인 조리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해설 ① (X)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관한 행정규칙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구분된다.
② (O)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며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효력이 발생하나,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을 정하는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시행일)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③ (O) 조리의 ‘최후의 보충적 법원성’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다.
④ (O)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4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훈령은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만 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발할 수 없다.
㉢ 훈령을 발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구체적 근거를 요하나, 직무명령은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훈령의 종류에는 ‘협회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으며, 이 중 예규는 반복적 경찰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의미한다.
㉤ 훈령은 직무명령을 겸할 수 있으나,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질을 가질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 해설** → ㉢ (X)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 (X) 훈령, 직무명령 모두 행정규칙으로서 법령의 구체적 근거가 없이도 발할 수 있다.
 ㉢㉤ 항목이 옳지 않다.

[핵심정리] 훈령과 직무명령

구 분		훈 령	직무명령
차 이 점	개념	① 상급경찰관청이 하급경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②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해서 발해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음 ③ 훈령의 종류에는 ‘협회의 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등이 있음	상관(상급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하급공무원)에게 발하는 명령
	구속대상	경찰기관의 의사를 구속	명령을 받은 당해 경찰공무원 개인의 의사를 구속
	효력	경찰기관을 구성하는 경찰공무원이 변경·교체되어도 유효	직무명령을 받은 경찰공무원의 변경·교체시 효력 상실
	위반의 효과	훈령에 위반한 행위는 위법이 아니며, 행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직무명령에 대한 위반은 위법은 아니나 공무원관계에서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됨
	경합	① 주관상급관청과 비주관상급관청의 것일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름 ② 주관상급관청이 상·하관계에 있는 때에는 직근상급경찰관청의 훈령에 따름 ③ 주관상급경찰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	
공통점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발할 수 있음	
양자의 관계		훈령은 직무명령의 성격을 가지나(훈령의 하나인 ‘지시’를 들 수 있음), 직무명령은 훈령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	

5 「경찰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내무부 치안국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고, 경찰청장은 행정관청으로 승격되었다.
 ② 「경찰법」 제8조에 따를 때 경찰위원회 위원은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 의무와 정치운동 금지의무를 진다.

- ③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해 경찰청장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해설

- ① (X) 내무부 치안본부장이 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다.
- ② (O) 위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경찰법 제8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이하 생략〉

- ③ (X)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교통·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경찰법 제17조 제3항).
- ④ (X)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동법 제2조 제2항).

6 경찰공무원의 의무 중 그 근거 법령이 나머지 셋과 다른 하나는?

- ①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 ③ 직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해설

- 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 ②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 ③ 경찰공무원법 제18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 ④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7 경찰책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위반상태에 책임 있는 자에게만 경찰권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 ② 경찰책임의 예외로서 경찰긴급권은 급박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법적근거는 요하지 않으나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긴급권의 발동이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생명·건강 등 제3자의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경찰책임의 종류에는 행위책임, 상태책임, 복합적 책임이 있다. 먼저 행위책임은 사람의 행위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상태책임은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그 지배범위 안에 속하는 물건·동물로 인해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

로 복합적 책임은 다수인의 행위책임, 다수의 상태책임 또는 행위·상태 책임이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④ 경찰책임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객관적 위험상황이 존재하면 인정되며, 자연인·법인, 고의·과실, 위법성 유무, 의사·행위·책임능력의 유무 등을 불문한다.

해설 ② (X) 경찰긴급권은 예외적인 것으로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①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아래 [핵심정리] 참고

[핵심정리] 경찰책임의 원칙

의의	①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상태에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임 ② 예외적으로 경찰긴급상태 때에는 비장해자(비책임자)에 대하여도 경찰책임이 인정됨 ③ 경찰책임은 그 위해의 발생에 대한 고의·과실, 위법성의 유무, 위험에 대한 인식여부 등을 묻지 않음 ④ 모든 자연인은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으므로 행위능력, 불법행위능력, 형사책임능력, 국적 여부, 정당한 권원의 유무 등은 문제되지 않음	
유형	행위 책임	자기 또는 자기의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질서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지는 경찰상의 책임
	상태 책임	물건 또는 동물의 소유자, 점유자 기타 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자는 질서위반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 경찰책임을 짐(고의·과실 불문)
	복합적 책임	① 다수인의 행위 또는 다수인이 지배하는 물건의 상태로 인하여 하나의 질서위반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경찰권 발동가능 ②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하는 경우 : 위험방지의 효율성과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여 경찰위반 상태를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해야 함이 원칙(일반적으로 행위책임자에게 경찰권 발동함이 적절한 경우 많음)
예외	① 경찰권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경찰책임자가 아닌 제3자(비장해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이 가능함 ② 경찰긴급권은 예외적인 것으로 목전의 급박한 위해를 제거하는 경우에 한하여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져야 함 ③ 경찰긴급권에 관한 일반규정은 없으며 「소방기본법」(제24조), 「경범죄 처벌법」(제3조 제1항 제29호), 「경찰관 직무집행법」(제5조 제1항 제3호)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④ 경찰긴급권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경찰책임이 없는 자에게 경찰권을 발동한 경우, 그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함	

8 경찰조직편성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부서보다는 분산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 ② 계층제는 조직의 경직화를 가져와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속적 대응을 어렵게 한다.
- ③ 조정의 원리는 구성원이나 단위기관의 활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통일하여 조직의 목표달성도를 높으려는 원리를 말한다.
- ④ 분업의 원리란 업무를 성질과 종류별로 구분하여 한 사람에게 한 가지의 동일한 업무만을 전담토록 하는 원리를 말한다.

해설 → ① (X) 통솔범위는 신설부서보다는 오래된 부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부서보다는 근접한 부서, 복잡한 업무보다는 단순한 업무의 경우에 넓어진다.
 ②③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9 경찰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②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한 예산으로 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을 명백히 하고 경비사용의 적정화에 유리한 장점이 있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이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 ①②③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④ (X)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언론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 ③ 정정보도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다.
- ④ 정정보도의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해설** ➡ ① (X)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② 동법 제7조 제1항
③ 동법 제14조 제1항 단서
④ 동법 제15조 제2항

11 다음은 관할지역 내 범죄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서별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들이다. 각 활동들의 근거가 되는 범죄원인론을 가장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 ㉠ A 경찰서는 관내에서 음주소란과 폭행 등으로 적발된 청소년들을 형사입건하는 대신 지역사회 축제에서 실시되는 행사에 보안요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 B 경찰서는 지역사회에 만연해 있는 경미한 주취소란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였다.
- ㉢ C 경찰서는 관내 자전거 절도사건이 증가하자 관내 자전거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전거에 일련번호를 각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 D 경찰서는 관내 청소년 비행 문제가 증가하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였다.

- 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②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③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낙인이론 ㉣-차별적 접촉 이론
④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낙인이론 ㉢-깨진 유리창 이론 ㉣-차별적 동일시 이론

- 해설** ➡ ①의 연결이 적절하다.
- ㉠ ‘낙인이론’은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이라고 본다. ‘전과자’라는 낙인을 찍는 것보다는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선도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낙인이론과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 ㉡ ‘깨진 유리창 이론’은 무관용 정책과 집합효율성의 강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된다고 본다.
- ㉢ 상황적 범죄예방이론 중 시간과 공간적 변동에 따른 범죄발생양상·범죄기회·범죄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고 미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범죄예방활동을 하고자 하는 일상활동이론과 연계된다.
- ㉣ Glaser의 ‘차별적 동일시이론’은 청소년들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방하고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범죄를 학습한다고 보는 이론이다. 폭력 영상물의 폐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유형의 영상물에 대한 접촉을 삼가도록 계도하는 것은 이 이론과 연계된다.

12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청소년은 모두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 ①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분된다.
②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사행행위 영업,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소의 경우 청소년의 고용뿐 아니라 출입도 금지되어 있다.
- ④ 청소년은 일반음식점 영업 중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한 소주방·호프·카페는 출입할 수 없다.

해설 ①②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③ 동법 제2조 제5호 가목(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④ (X) 청소년 고용만 금지되며, 출입은 허용된다(동법 제2조 제5호 나목(청소년 고용금지업소)).

[핵심정리]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또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①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사행행위영업(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별법) ③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식품위생법) ④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⑤ 노래연습장업(다만, 청소년실은 출입 가능)(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⑥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⑦ 전화방, 화상대화방 ⑧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⑨ 성기구판매업소 ⑩ 「한국마사회법」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 ⑪ 「경륜·경정법」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 ※ 경마, 경륜·경정 개최일 한정 규정 2019.12.12.부터 삭제됨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출입은 가능)	①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② 숙박업(민박, 휴양콘도미니엄업 제외), 이용업(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공중위생관리법) ③ 티켓다방, 소주방, 호프, 카페(식품위생법) ④ 비디오물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⑤ 유독물영업(유독물사용업 중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제외)(화학물질관리법) ⑥ 유료 만화대여업
※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함	

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 ②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③ 국무총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 ④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관리 체계상 복구 단계에서의 활동에 해당된다.

해설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 ② 동법 제3조 제3호
- ③ (X)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동법 제6조).
- ④ (O)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제7장(재난의 복구) 제60조에 규정되어 있다.

14 다음 중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甲이 구난차 등이 아닌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②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한 乙이 구난차 등이 아닌 특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③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丙이 승차정원 10인의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④ 제2종 보통면허를 소지한 丁이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해설

- ① 제1종 보통면허로는 구난차 등이 아닌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므로 10톤의 특수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 ②③④ 모두 무면허운전이 아니다. 아래 [핵심정리] 참고

[핵심정리]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

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 콘크리트믹서트레이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함) •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제1종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대형 견인차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 견인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	• 구난형 특수자동차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함) → 배기량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 면허	제1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 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15 정보의 배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정보의 배포란 정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관에게 적합한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제공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적합한 형태를 갖출 필요는 없다.
- ㉡ 보안성의 원칙은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되면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 계속성의 원칙은 정보가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 ㉣ 정보배포의 주된 목적은 정책입안자 또는 정책결정자가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정책결정에 이르도록 하는 데 있다.
- ㉤ 정보는 먼저 생산된 것을 우선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① ㉠(X) ㉡(X) ㉢(O) ㉣(X) ㉤(O)
- ② ㉠(X) ㉡(O) ㉢(O) ㉣(O) ㉤(X)
- ③ ㉠(O) ㉡(O) ㉢(X) ㉣(O) ㉤(O)
- ④ ㉠(X) ㉡(O) ㉢(O) ㉣(X) ㉤(X)

해설

- ㉠ (X) 정보내용과 양, 정보의 긴급성, 비밀등급 등의 제 요소를 고려하여 적합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X) 정보는 먼저 생산되었다고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다. 정보의 배포 순위는 정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보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한다.
 ㉢㉣㉤ 모두 옳은 설명이다. 아래 [핵심정리] 참고

[핵심정리] 정보 배포의 원칙

필요성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 필요가 없는 대상에게 알려서는 안됨
적시성	① 정보는 정책결정과정에 정보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포되어야 함 □ 최종사용자가 정보를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줄 수 못하는 배포는 시기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평가됨 ② 정보는 먼저 생산되었다고 우선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아님. 정보의 배포 순위는 정보의 중요성과 긴급성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보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배포해야 함
적당성	정보는 사용자의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적당한 양을 조절하여 필요한 만큼만 적절한 전 파수단을 통해 전달되어야 함
보안성	정보연구 및 판단이 누설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계속성	특정 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함

1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장관의 방문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③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상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말하며,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 등의 이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설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② 동법 제9조의2 제1항
 ③ 동법 제12조
 ④ (X) “반출·반입”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물품등의 이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3호).

17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의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 ㉠ 10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 ① ㉠(X) ㉡(O) ㉢(O) ㉣(X) ㉤(O) ② ㉠(O) ㉡(X) ㉢(O) ㉣(O) ㉤(X)
 ③ ㉠(O) ㉡(O) ㉢(X) ㉣(X) ㉤(O) ④ ㉠(X) ㉡(O) ㉢(O) ㉣(X) ㉤(X)

- 해설** ㉠ (X)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국적법 제5조 제1호)
 ㉡ (X)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국적법 제5조 제3호)
 ㉢㉣㉤ 옳은 내용이다(국적법 제5조 제1호의2, 제2호, 제6호)

국적법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인 귀화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추는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6.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18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이다.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은?

- A-(㉠), 외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 F-(㉢),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상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단순 노무행위 등 법령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㉔) - 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㉔ ㉕ ㉖ ㉗

① 2 D 6 E

② 2 E 4 F

③ 1 E 6 F

④ 1 D 4 E

해설 → ④의 연결이 옳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핵심정리] 외국인의 장기체류자격(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A-1 (외교)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A-2 (공무)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D-2 (유학)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E-2 (회화지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E-6 (예술흥행)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F-4 (재외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F-6 (결혼이민)	① 국민의 배우자 ②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9 경찰 수사와 관련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범죄수사를 명백히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 ② 수사진행에 있어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영장청구는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할 수 있다.
- ③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2011년 일부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고 검사

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였으나, 한편으로는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권을 명시하였다.

- ④ 2019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되었다.

- 해설** → ① 「경찰법」 제3조 제2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호에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를 경찰의 임무(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 ② (X) 사법경찰관이 직접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신청을 받은 검사가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등).
- ③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형사소송법 제196조 제1항).
- ④ 옳은 설명이다.

20 다음은 한국경찰사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경찰의 표상에 관한 설명이다. ㉠~㉤에 해당하는 인물을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 ㉠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이다.
- ㉡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경국장으로,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등과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군부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 ㉢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여 화엄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등 여러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다.
- ㉤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격투 끝에 청와대를 사수하였으며,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① ㉠ 김구 ㉡ 안병하 ㉢ 차일혁 ㉤ 정중수
- ② ㉠ 김원봉 ㉡ 안병하 ㉢ 최규식 ㉤ 정중수
- ③ ㉠ 김구 ㉡ 차일혁 ㉢ 안병하 ㉤ 최규식
- ④ ㉠ 김구 ㉡ 최규식 ㉢ 안병하 ㉤ 차일혁

해설 → ①의 연결이 옳다. 아래 [핵심정리] 참고

[핵심정리]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실종 39p 표>

김구 선생	①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 ② 대한민국 「헌법」은 그 전문에서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

최규식 경무관, 정종수 경사	① 호국경찰의 표상 ② 1968년 1.21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최규식 총경(경무관특진)과 형사 7명이 종로경찰서 자하문검문소에서 무장공비를 차단·격투 끝에 청와대 사수함 ③ 군 방어선이 뚫린 상황에서 경찰관 최규식(태극무공훈장)·정종수(화랑무공훈장)의 순국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조국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영웅적인 사례임
차일혁 경무관	① 호국경찰·인권경찰·문화경찰의 표상 ②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광복군·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 독립운동, 광복 후 우익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탄생에 도움을 줌 ③ 전북 18전투경찰대대장(경감)으로 경찰 투신,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 사살(1953년)로 빨치산 토벌의 주역임 ④ 빨치산 토벌 당시 이현상을 ‘적장의 예’로써 화장해주고, 생포한 공비들에 대하여 관용과 포용으로 귀순을 유도한 인본경찰·인권경찰의 표상이 됨 ⑤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 대하여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세우는 데는 천 년 이상의 세월로도 부족하다.’며 사찰의 문짝만 태움으로써 화엄사(구례), 천은사(구례), 선운사(고창), 백양사(장성), 쌍계사(하동), 금산사(김제) 등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였고, 충주경찰서장 재직 당시 ‘충주직업소년학원’을 설립하여 불우아동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문화경찰의 표본이 됨 ⑥ 화엄사 공적비 건립(1998),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인물’ 선정(2000, 조선일보), 보관문화훈장 수훈(2008), 감사장 추서 및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 선정(2008, 문화재청), 드라마 ‘여명의 눈동자’ 주인공 장하림(박상원 역) 실제모델(1991, MBC) 등으로 업적을 인정받음
안병하 치안감	① 민주경찰·인권경찰의 표상 ②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1961년 경찰에 투신, 1979년 2월 전라남도 경찰국장으로 임명 ③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안병하 국장은 과격한 진압을 지시했던 군과 달리, ‘분산되는 자는 너무 추격하지 말 것, 부상자 발생치 않도록 할 것, 기타 학생은 연행할 것’ 등을 지시하고, ‘연행과정에서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지시함 ④ 신군부의 명령을 어긴 죄로 직무유기 혐의로 직위해제 당하고 보안사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10여일간 혹독한 고문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사망함 ⑤ 2006년 순직경찰로 인정받아 서울 국립현충원에 영면 ⑥ 2009년 문을 연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는 안병하 치안감의 이름을 딴 안병하 홀이 생김